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전부개정시('22.6.29 시행) 지식서비스업 창업 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지식서비스업의 업종의 범위와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규정 (안 제10조제5항)

- 지식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으로 설정하고, 면제요건을 동업종(13개)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*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한정

* 「기초연구법」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7. 26. ~ 8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”이란 별표 1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.

제18조제1항 중 전문의 “별표 1 제1호”를 “별표 2 제1호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후문의 “별표 1 제2호”를 “별표 2 제2호”로 한다

제28조제1항 중 “별표 2”를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제1호 중 “별표 2”를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별표 3과”를 “별표 4와”로 한다.

제40조제2항 중 “별표 4”를 “별표 5”로 한다.

제42조제2호 중 “별표 2”를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43조 중 “별표 5와”를 “별표 6과”로 한다.

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[별표 1]

지식서비스업종(제10조제5항 관련)

1. 금융 및 보험업(64~66)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호가목 1)에 따른 업종으로만 한정한다.
2.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면제는 출판업(58)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연구개발업(70),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72)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대분류		중분류	
J (58~63)	정보 통신업	58	출판업
		59	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
		60	방송업
		61	우편 및 통신업
		62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		63	정보서비스업
K (64~66)	금융 및 보험업	64	금융업
		65	보험 및 연금업
		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M (70~73)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0	연구개발업
		71	전문 서비스업
		72	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		73	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조(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”이란 별표 1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.
제18조(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자료 조회 요청)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“「형법」 제347조, 제356조,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”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, 같은 항 제2호에서 “「근로기준법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”란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. ② · ③ (생략)	제18조(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자료 조회 요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별표 2 제1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별표 2 제2호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)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”이란 <u>별표 2</u> 의 전문인력을 말한다.	제28조(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1조(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) ①·② (생략)	제31조(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<u>별표 2</u> 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할 것	1. <u>별표 3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)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, 해외창업지원기관, 지역창업전담기관,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·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<u>별표 3</u> 과 같다.	제34조(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4</u> 와 -----.
제40조(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) ① (생략)	제40조(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	② -----

른 참여제한 사유 등의 구체적 인 기준은 <u>별표 4</u>와 같다.	----- ----- <u>별표 5</u>-----.
제42조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.	제4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 략) 2. 제28조 및 <u>별표 2</u>에 따른 창 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별표 3</u>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 5</u>와 같 다.	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 ----- ----- <u>별표 6</u>과 --- 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630